

창원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단22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남재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몰래 합계 4,785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원고의 독촉에도 그중 15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4,77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4,77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3. 25.부터 2021. 6. 4.까지 11회에 걸쳐 원고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D은행 계좌로 합계 4,785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대부분이 이체 직후 차량 관련 비용, 세금 납부, 인건비 등으로 다시 이체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이체 내역, 원고의 대표자 변동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원고의 대표자 E, 피고, F이 동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원고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G는 E, 피고, F이 만나 회의를 하고 자금 얘기도 하였으며, E, F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류 정리, 송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현재까지 앞서 인정된 이체 내역 외에 피고의 횡령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체된 4,785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